##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740 2023년 6월 16일환경수자원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5월 30일, 박성연 의원 외 19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다. 상정일자 :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
(2023년 6월 16일 상정·수정안 가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박성연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제도는 수도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, 1회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많은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음.
- 따라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○ 원인자의 신청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8조제2항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수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박귀수)

#### 가. 개요

○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(이하 "부담금"이라 함)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시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임.

#### 나. 검토의견

○ 「수도법」 제71조와 현행 조례 제2조는 수도시설 공사 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 비용(부담금)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.

또한, 현행 조례 제8조는 부담금의 징수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일시불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, 동 조 단서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서 분할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음.

#### 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

제8조(부담금의 징수방법)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일시불로 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규칙이 정하는 비용은 별도 징수할 수 있으며 분할 징수 시 별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#### 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」

제8조(원인자부담금의 분할징수) 조례 제8조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중 분할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통지예정일 전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지원경비, 홍보비, 도로복구비 등으로 한다.

다만, 부담금 중 분할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통지예정일 전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지원경비, 홍보비, 도로복구비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분할 징수(납부) 효과는 없는바, 부담금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임.

#### <2022 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내역>

(단위: 백만원, %)

										-	_, , , , ,
부과 대상 <sup>3)</sup>	전 체	원상복구비	손괴예방 시설비용	누 등 수돗물에 따 요금		출동 경비	측량비	시설물 이설비용 및 기타	도로 복구비	홍坤	재원 경비
		일시 불					분할				
금액	817	207	0	328	0	72	144	62	4	1	0
비율	100	25.3	-	40.1	-	8.9	17.6	7.6	0.4	0.1	-

부담금 징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최근 5년간 급수공사에 따른 부담금 규모는 총 26,916건에 1,268억원으로 1건당 평균 471만원수준이며, 많게는 건당 11억 3천만원까지 일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

#### <최근 5년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>

(단위: 건, 백만원)

ᄀᆸ		ніп		
구 분	건수	금액	건당 평균(천원)	비고
2018년	7,341	30,422	4,144	
2019년	5,903	27,138	4,597	
2020년	5,274	26,170	4,962	
2021년	4,579	25,356	5,538	
2022년	3,819	17,719	4,640	
계	26,916	126,805	4,711	

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납무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<sup>4)</sup>한 바 있으며, 부산 등 주요 광역시에서는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조례에 분할납부 기간과 분할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.

<sup>3)</sup>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(177억 1천9백만원) 제외

<sup>4)</sup> 국민권익위원회는 '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'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('21.11.4.)

#### <타 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근거 현황>

도시명	부산	인천	대구	광주	대전	울산
분할 기간 및 횟수	2년 <sup>5)</sup> 범위내 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	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	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	최대 5회까지 분할납부 가능	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	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 가능
제 • 개정 일자	2022. 2	2021. 12	2014. 6	2018.1	2014. 8	2014.11

- 따라서 안 제8조제2항과 같이 서울시도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
 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다만, 동 조례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, 장기간 체납 발생 및 징수업무 혼선 등이 우려되는바, 부산시 등과 같이 분할 납부 기한과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또한, 부과 관련 시스템 개선 등 원활한 부담금 납부관리를 위해 시행 시기 조정<sup>6</sup>)도 필요할 것임.

<sup>5) 「</sup>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·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」(환경부, '10.7.2.)

제6조(부담금의 부과·징수) ①~④(생략)

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(또는 군수)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

<sup>6)</sup> 시행일자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부칙수정 요망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없음

## 7. 수정안 요지

- 원인자부담금의 체납방지를 위해 분할납부 기간(2년)과 횟수(4회)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며, 시행일을 조정하고 함.
- 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740

제안년월일: 2023년 6월 16일

제 안 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○ 원인자부담금의 체납방지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을 최대 2년 이내 4회까지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## 2. 주요 골자

-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최대 2년 이내 4회까지로 함(안 제8조제2항)
- 시행일을 조정함(안 부칙)

### 3. 참고사항 : 생략

##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2항 중 "경우"를 "경우 최대 2년 이내 4회까지로"로 한다.

안 부칙 중 "공포한 날"을 "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"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부담금의 징수방법)	제8조(부담금의 징수방법)	제8조(부담금의 징수방법)
(생 략)	① (현행 제목 외의 부	① (현행 제목 외의 부
	분과 같음)	분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	②
	하고 원인자의 신청에	
	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	
	은 <u>경우</u> 부담금을 분할	<u>경우 최대 2년 이내</u>
	하여 납부할 수 있다.	<u> 4회까지로</u>

##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원인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최대 2년 이내 4회까지로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8조(부담금의	징수방법) (2	생 략)	제8조(부담금의 징수방법) ① (현행
			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		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원인
			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
			얻은 경우 최대 2년 이내 4회까지
			로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
			<u>있다.</u>